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·설치·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

시·도지사	직인
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	직인
읍·면·동의 장	직인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

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·설치·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

1. 대상 지역

특별시·광역시 구 동

도 시·군 읍·면·동

2. 기관 설치 및 경계변경 필요성(구체적으로 기재)

3. 기관 설치

가.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

구 분	인구(명)	면적(㎢)	인구 증가율(%)	읍·면·동·리 수			자체 수입(백만원)	세출 규모(백만원)	공무원 정원(명)
				읍·면 수	동·리 수				
					법정	행정			
현 재									
조정 전(신설 기관)									
조정 후(잔여)									

※ 공무원 정원 중 순증가 인원은 ( ) 안에 기재

나. 법정동(法定洞)

○ 동의 명칭:

○ 사 유:

○ 관할구역

동 의 명 칭	관 할 구 역
○ ○ 동	
○ ○ 동	

4. 관할구역

구 분	기관 명칭	관할구역(읍·면·동·리)
기 존		
신 설		

5. 경계변경의 경우

구분	현 재			변 경			변 경 후		
	인구(명)	면적(㎢)	읍·면·동·리수	인구(명)	면적(㎢)	읍·면·동·리수	인구(명)	면적(㎢)	읍·면·동·리수
편입되는 지역									
편입받는 지역									

※ 법정동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번별 조서를 첨부

6. 기관설치에 따른 필요 예산

구 분		현 재	필 요 예 산(계획)
계			
인건비	소 계	명	증 명(백만원)
	자치구가 아닌 구	명	증 명(백만원)
	읍·면·동	명	증 명(백만원)
청사비	소 계	㎡	증 ㎡(백만원)
	대 지	㎡	증 ㎡(백만원)
	건 물	㎡	증 ㎡(백만원)
시설비 및 경상비	소 계		증 (백만원)
	차 량	대	증 대(백만원)
	통신시설		(백만원)
	집기·사무용품		증 (백만원)
	경상(수용)비		증 (백만원)

※ 작성방법

1. 인건비는 1인당 7급 11호봉 인건비(해당연도 기준호봉)를 기준으로 계상(計上)
2. 청사비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되, 증축비·개축비만 계상
3. 시설비 및 경상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을 적용

7. 청사 확보 및 예산조치계획

가. 청사 확보

<단 기>

<장 기>

나. 예산조치

8. 기구・정원

가. 기 구: 국・과・계의 명칭(변경 전) → 국・과・계의 명칭(변경 후)

나. 정 원

구 분 \ 직급별	계	4급	5급								6급 이하
			소계	행정	지적	토목	건축	보건・위생	행정・별정	기타	
계											
기존 지방자치단체 감축정원 이관											
읍・면・동・출장소 등의 감축정원 이관											
정원 승인											

9. 지역 의견

가.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

나. 해당 지방의회 의견

다. 종합 의견 (시장・군수・자치구청장)

10. 관할구역도(별지작성)

관 할 구 역 도 작 성 방 법

1. 변경 대상 지역이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작성
2. 작성 도면
   가. 축적 1/5,000과 1/50,000의 원도 각 2장(크기 : B4)
   (1장 : 조정 내용 표기, 1장 : 백지도)
   나. 법정동·법정리 중 일부가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본과 1/1,200의 접합도 추가

3. 표기 요령
   가. 시·도 간 경계 ――――<·>――――<·>――――(검은색)
   나. 시·군·자치구 간 경계 ―――― ·· ―――― ·· ――――(파란색)
   다. 읍·면·동 간 경계 ―――― · ―――― · ――――(검은색)
   라. 시청 소재지 : ◎(붉은색)
   마. 군청 소재지 : ◎(파란색)
   바. 읍·면 소재지 : ○(붉은색)
   사. 출장소 소재지 : △(붉은색)
   아. 편입 대상지 경계(예시) ―――― ·· ―――― ·· ――――(녹색)
   자. 도로(통행로) 방향 ----------►(갈색)
   차. 편입되는 지역 : 연파란색
   카. 편입받는 지역 : 연노란색
   타. 변경 대상 지역 : 연노란색
   파. 신설되는 구·읍·면지역 : 연녹색